중앙하이츠 구성 플랫폼시티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10.29.(목)]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1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99-1008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용인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2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9.(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2026.11.09.(월)	2026.11.10.(화)	2026.11.11.(수)	2026.11.12.(목)	2026.11.18.(수)	2026.11.21.(토) ~ 2026.11.25.(수)	2026.11.30.(월)~ 2026.12.02.(수)
방 법	• (PC · 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홍보관	• (PC · 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 · 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홍보관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18, 1층)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청 주택정비과 – 30966호(2026.10.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9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최고 15층, 2개동, 총 130세대[조합원 54세대] 중 일반분양 76세대
[특별공급 35세대(기관추천 5세대, 다자녀가구 6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노부모 2세대, 생애최초 6세대, 신생아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 000535	01	059.9670A	59A	59.9670	17.9773	77.9443	45.0934	123.0377	35.3839	18	1	2	3	1	2	2	11	7	2
	02	059.9898B	59B	59.9898	17.9195	77.9093	45.1106	123.0199	35.3680	13	1	1	2	–	1	1	6	7	1
	03	068.9683	68	68.9683	21.2547	90.2230	51.8621	142.0851	40.9580	5	–	–	–	–	–	1	1	4	1
	04	074.9857	74	74.9857	23.1114	98.0971	56.3870	154.4841	44.5326	23	2	2	3	1	2	1	11	12	2
	05	079.9780	79	79.9780	25.7043	105.6823	60.1411	165.8234	47.9760	12	1	1	1	–	1	1	5	7	1
	06	084.9932	84	84.9932	25.4468	110.4400	63.9125	174.3525	50.1358	5	–	–	1	–	–	–	1	4	2
	합 계									76	5	6	10	2	6	6	35	41	9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9670A	059.9898B	068.9683	074.9857	079.9780	084.9932
약식표기(타입)	59A	59B	68	74	79	84

※ 상기 주택형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신청 시('청약홈') 구분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타입)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10%) 2027.01.25.	2차(10%) 2027.04.25.	3차(10%) 2027.07.25.	4차(10%) 2027.10.25	5차(10%) 2028.01.25	6차(10%) 2028.04.25	입주 지정일
59A	102동 (1,2호)	2층	2	183,500,000	393,800,000	577,30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173,190,000
		4층	1	187,700,000	402,700,000	590,40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177,120,000
		5~8층	4	193,400,000	414,900,000	608,30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182,490,000
		9~12층	7	197,000,000	422,600,000	619,60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185,880,000
		13층 이상	4	198,700,000	426,300,000	625,0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87,500,000
59B	101동 (4호)	2층	1	183,600,000	394,000,000	577,60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173,280,000
		3층	1	186,100,000	399,200,000	585,300,000	58,530,000	58,530,000	58,530,000	58,530,000	58,530,000	58,530,000	58,530,000	175,590,000
		4층	1	187,800,000	402,900,000	590,700,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177,210,000
		5~8층	4	193,500,000	415,100,000	608,60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182,580,000
		9~12층	4	197,100,000	422,800,000	619,90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185,970,000
		13층 이상	2	198,800,000	426,500,000	625,300,000	62,530,000	62,530,000	62,530,000	62,530,000	62,530,000	62,530,000	62,530,000	187,590,000
68	102동 (4호)	1층	1	209,200,000	448,900,000	658,10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197,430,000
		2층	1	210,500,000	451,700,000	662,200,000	66,220,000	66,220,000	66,220,000	66,220,000	66,220,000	66,220,000	66,220,000	198,660,000
		9~12층	2	225,900,000	484,700,000	710,600,000	71,060,000	71,060,000	71,060,000	71,060,000	71,060,000	71,060,000	71,060,000	213,180,000
		13층 이상	1	227,900,000	488,900,000	716,80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215,040,000
74	101동 (3호) 102동 (5호)	1층	2	225,100,000	483,000,000	708,100,000	70,810,000	70,810,000	70,810,000	70,810,000	70,810,000	70,810,000	70,810,000	212,430,000
		2층	2	226,600,000	486,000,000	712,60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213,780,000
		3층	2	229,400,000	492,200,000	721,600,000	72,160,000	72,160,000	72,160,000	72,160,000	72,160,000	72,160,000	72,160,000	216,480,000
		4층	2	231,500,000	496,800,000	728,30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218,490,000
		5~8층	6	238,700,000	512,100,000	750,80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225,240,000
		9~12층	7	243,000,000	521,400,000	764,400,000	76,440,000	76,440,000	76,440,000	76,440,000	76,440,000	76,440,000	76,440,000	229,320,000
		13층 이상	2	245,200,000	525,900,000	771,10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231,330,000
79	102동 (3호)	1층	2	240,200,000	515,400,000	755,60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226,680,000
		2층	1	241,800,000	518,600,000	760,40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228,120,000
		3층	1	244,800,000	525,300,000	770,100,000	77,010,000	77,010,000	77,010,000	77,010,000	77,010,000	77,010,000	77,010,000	231,030,000
		5~8층	4	254,600,000	546,300,000	800,900,000	80,090,000	80,090,000	80,090,000	80,090,000	80,090,000	80,090,000	80,090,000	240,270,000
		9~12층	2	259,200,000	556,200,000	815,40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244,620,000
		13층 이상	3	261,600,000	561,100,000	822,70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246,810,000
84	101동 (1,2호)	1층	2	251,000,000	538,600,000	789,600,000	78,960,000	78,960,000	78,960,000	78,960,000	78,960,000	78,960,000	78,960,000	236,880,000
		2층	2	252,600,000	542,000,000	794,600,000	79,460,000	79,460,000	79,460,000	79,460,000	79,460,000	79,460,000	79,460,000	238,380,000
		9~12층	1	270,900,000	581,200,000	852,10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255,630,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604-673569	마북298의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외 2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홍보관에서 일체의 현금 ·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시 · 도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50% ※ 단, 우선공급 물량에서 경쟁 발생 시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잔여물량에서 재경쟁 시 지역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 소득구분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1단계 /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 순위 순위 / 내용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 '단독세대'란,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주택형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1단계 / 우선공급(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 일반공급(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계 / 추첨공급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의 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 소득구분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1단계 / 우선공급 (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 일반공급 (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 일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